1. 개정이유

고용정책기본법 개정('19.4.30)에 따라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절차 명확화(안 제3조)

법에서 위임한 고용영향평가 절차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안 요구 전까지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

나. 법 조문 순서에 맞춰 시행규칙 조문 및 서식 개정(안 제2조, 제4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조,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제6조, 제2조, 제5조 및 제7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고용영향평가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까지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고용영향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종전의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5조의2제2항”을 “제15조의6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이하 “고용안정정보망”이라 한다)”을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고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고용안정정보망”을 “고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5조의2제1항”을 “법 제15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4조) 중 “제2조”를 “제6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다목 중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

항제1호):”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서식 라목 중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제2호):”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서식 마목 중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제3호):”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서식 바목 중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제4호):”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다목 중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제1호):”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서식 라목 중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제2호):”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서식 마목 중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제3호):”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서식 바목 중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제4호):”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2”를 “시행규칙 제6”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①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해당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근무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형태 현황을 사업장별로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형태 현황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① ---------- ---------- 제15조의6제2항-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현황 공시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이하 “고용안정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한다. 이 경우 고용안정정	② ---------- ----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고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 -------. ------ 고용정보시

보망은 최근 3년(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3년 미만인 사업주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의 공시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을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시함으로써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갈음할 수 있다.	스템---------- ---------- ---------- ---------- ----------. ③ ---------- ---------- ---------- ---------- ---------- ---------- ---------- 법 제15조의6제1항- ----------.
제2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2조와 같음)
<신 설>	제3조(고용영향평가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까지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고용영향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생 략)	제2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3조의2 (생 략) 제4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2조에 따른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현행 제3조의2와 같음) 제7조(규제의 재검토) ---------- 제6조----------. ----------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1. 21.>~~

고용형태 현황

사업체 (법인)	사업체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구분		합계	남성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공시내용	소속 근로자 수	합계	명	명	명
		단시간근로자 수 합계	명	명	명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	명	명	명
		단시간근로자 수	명	명	명
		기간제근로자 수	명	명	명
		단시간근로자 수	명	명	명
	소속 외 근로자 수		명	명	명
특기사항					

작성방법

※ **공시내용 란**은 다음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작성합니다.

가. 근로자 수의 산정기준일은 매년 **3월 31일(해당 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을 말합니다)**입니다.

나. **소속 근로자 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고용하고 있는 정규직 등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를 **단시간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라. **기간제근로자 수(「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수**를 **단시간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마. **단시간근로자 수(「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수**를 각각 적습니다.

바. **소속 외 근로자 수(「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공시를 하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사용(파견, 하도급, 용역 등)하는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사. 특기사항: 퇴직 후 재고용, 출산 여성 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의 특기사항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7. 11. 21.>

사업장 고용형태 현황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대표자	담당자 성명

	구분			합계	남성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공시내용	소속 근로자 수	합계		명	명	명
			단시간근로자 수 합계	명	명	명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		명	명	명
			단시간근로자 수	명	명	명
		기간제근로자 수		명	명	명
			단시간근로자 수	명	명	명
	소속 외 근로자 수			명	명	명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						

작성방법

※ **공시내용 란은** 다음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작성합니다.

가. 근로자 수의 산정기준일은 매년 **3월 31일(해당 일이 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을 말합니다)**입니다.

나. **소속 근로자 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를 말하며,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정규직 등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를 단시간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라. **기간제근로자 수(「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수를 단시간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마. **단시간근로자 수(「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수**를 각각 적습니다.

바. **소속 외 근로자 수(「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공시를 하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파견, 하도급, 용역 등)하는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사.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 **한국고용직업분류표(중분류)**를 참고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 하는 주요 업무를 기재하되, 소속 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체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주요 **업체 소속 근로자의 대표적인 업무를 모두**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3.2.>~~

대량고용변동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사업장명	전화번호	
	대표자	사업장관리번호	
신고내용	근로자 수 총원 명	남 명	여 명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유		
	이직자 수 총원 명	남 명	여 명
	이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유의사항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30명 이상,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직하는 근로자의 이직일 30일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0㎜×297㎜[백상지 80g/㎡]